

수신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「특별징수명세서 제출」 안내 요청

1. 서울시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」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의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(특별징수명세서)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3. 귀 기관의 세무업무 위탁사업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원이 특별징수명세서를 3.31.(금)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, 회원 이메일·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회원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《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개요》

- 대 상 자 :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
- 근 거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0조의19
- 제출자료 :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(국내원천)의 이자·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
- 제출서식 :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42호의4
(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)
- 제출기한 : '17년 3월 31일까지
- 상세안내 : 위택스(www.wetax.go.kr)·이택스(etax.seoul.go.kr) 홈페이지 공지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한국공인회계사회장, 한국세무법인협회장, 한국세무고사회장, 한국세무사회장, 은행연합회장,
중소기업중앙회장

주무관 박성호 소득소비세팀장 유재천 세무과장 03/07
임출빈

협조자

시행 세무과-5430 (2017.3.8.) 접수 ()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, 서소문청사 1동 9층 / www.seoul.go.kr
전화 02-2133-3406 /전송 02-2133-1034 / yotta98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